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27 발의연월일: 2024. 1. 3.

발 의 자:이해민·이훈기·강훈식

임미애 · 김우영 · 이정헌

황운하 · 김준형 · 김재원

서미화 · 차규근 · 박은정

서왕진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,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 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.

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(이하 '비행기록장치'라 한다)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'비행기록장치'는 포함되어 있 지 않음.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.

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'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'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

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,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5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신설).

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국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국가 안 보 또는 기밀 유지와 관련하여 제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.
- ⑥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)
- 2. 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)
- 3. 초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 항공기의 소유자)
- ⑦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사고 구분
- 2. 분야 구분
- 3. 발생유형

- 4. 항공기기종 등
- 5. 발생 일시 및 장소
- 6. 발생 단계
- 7. 발생 개요
- 8. 제52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3호에 따른 '비행기록장 치'에 기록된 자료
- 9. 피해 규모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.
- ⑧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,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항공안전 의무보고) ① ~	제59조(항공안전 의무보고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⑤ 국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
	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제출
	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국토
	교통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
	다. 다만, 국가 안보 또는 기밀
	유지와 관련하여 제출이 제한되
	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
	밝혀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⑥ 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
	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
	<u>같다.</u>
	1. 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
	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
	<u>공기의 소유자)</u>
	2. 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
	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
	<u> 경량항공기의 소유자)</u>
	3. 초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
	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
	그 초경량항공기의 소유자)
	⑦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되
	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

따른다.

- 1. 사고 구분
- 2. 분야 구분
- <u>3. 발생유형</u>
- 4. 항공기기종 등
- 5. 발생 일시 및 장소
- 6. 발생 단계
- 7. 발생 개요
- 8. 제52조 및 이 법 시행규칙 제

   109조제1항제3호에 따른 '비

   행기록장치'에 기록된 자료
- 9. 피해 규모
- 10.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⑧ 제1항에 따른 보고 시기,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